|  |  |  |
| --- | --- | --- |
| **국무원 판공청**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  국판발 [2014] 3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과 국무원 부서요구를 관철하여 실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권력범위의 명확한 구분제도를 구축하여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원비준을 거쳐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관련비용 수취목록의 명세제도 구축 및 실시  기업관련비용 수취정책의 투명성을 진일보 제고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유관 정책규정에 따라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정부성기금을 설립하고, 정부가 결정하거나 지도하는 가격의 경영서비스성 비용 수취를 실시하고 해당비용을 수취한 목록의 명세관리를 실행하며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정비한다. 모든 기업관련비용 수취목록의 명세 및 그 구체적인 실시상황을 각 지역, 각 부문의 공시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부사이트와 공공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외에 공시하며 사회감독을 받는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반드시 목록의 명세를 엄격히 집행하고 목록의 명세 이외의 기업관련 수취비용은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 한다.  2.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의 엄격한 심사비준  본 통지를 인쇄발행한 날로부터 새로 설립한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은 반드시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의 근거는 없지만 국제관례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필히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 재정부는 유관부문과 연합하여 심사비준한 후 국무원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각급 재정, 가격 등 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정비해야 하고 비용 수취관리와 산업정책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수취비용 영수증과 허가증 관리제도를 완전하게 정비하고 단계별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한다.  3.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 및 수취비용의 실제적인 규범화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 및 수취비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며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는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행정심사비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세를 공시하는 동시에 수취비용과 관련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 항목을 공시하고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시장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개별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거나 지도하는 가격이 필요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결정가격 목록관리에 의해 실행한다. 정부결정가격 목록에 열거된 행정심사비준의 전치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원가를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서비스가격을 제정한다. 업종협회, 중개조직의 기업관련비용 수취행위를 규범화한다.  4.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규정 위반행위의 철저한 조사  각 유관부문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법비용 수취, 불법벌금과 분담 등 행위를 철저히 제지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정부성기금과 행정심사비준의 전치경영서비스에 관한 비용 수취항목은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독단적으로 수취비용 기준을 높이며 수취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하고 각종 방식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부참여, 간행물주문, 훈련참여, 사회단체가입 및 서비스를 지정해주는 행위를 금하며 업종협회, 중개조직이 행정자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등 행위를 금한다. 상기 행위가 발견되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기업분담금지 잠행조례>,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등 법률법규 및 당 중앙 국무원 불법비용 수취에 관한 유관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기업부담조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고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정비하여 사회여론의 감독 및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5. 기업관련비용 수취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정세청비(正税清费)-합리적인 비용 수취, 올바른 세금 납부’ 원칙에 따라 기업관련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정부성기금 항목을 진일보 정리, 취소, 정합하여 규범화하고 항목의 수량을 순차적으로 경감시킨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또는 일반성 관리직능의 행정사업성 수취비용 항목을 취소하며; 부문직능을 결합하여 조정하고 다른 부문에 나뉘어 설립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과 관련된 항목을 합병한다.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공공재정제도의 요구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부성기금 항목을 취소하며 법에 의거하여 세수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취비용기금 항목을 상응한 세무종류에 병합한다. 소형기업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지하며, 시행하고 있는 각항 수취비용 경감, 면제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소형기업의 관리류, 등기류와 증서류에 관련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의 잠정적인 면제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기업관련비용 수취정책의 홍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3자 평가메커니즘의 구축과 실시를 추진하며 비용 수취정책의 목적성, 시효성을 실제적으로 강화한다. 기업권익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연구하고 완전하게 정비한다.  각 지역, 각 유관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며 각급 부문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업무메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조직과 리더를 강화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실시한다.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제연석회의는 전국범위내의 업무지도, 조직협상과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연석회의의 각 구성단위는 직책에 따라 유관정책의 실시를 원활히 추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유관부문은 기업관련비용 수취관리 및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업무의 실시상황을 국무원 기업부담경감 부제연석회의 판공실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공업정보화부에 설치)  국무원 판공청  2014년 6월 16일 |  | **国务院办公厅**  **关于进一步加强涉企收费**  **管理减轻企业**  **负担的通知**  国办发〔2014〕30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精神和国务院的部署要求，进一步推进简政放权，建立权力清单制度，充分发挥市场配置资源的决定性作用，激发企业特别是小微企业的活力，经国务院批准，现就进一步加强涉企收费管理、减轻企业负担有关事项通知如下：  一、建立和实施涉企收费目录清单制度  进一步提高涉企收费政策的透明度，对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政策规定设立的涉企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和实施政府定价或指导价的经营服务性收费，实行目录清单管理，不断完善公示制度。所有涉企收费目录清单及其具体实施情况纳入各地区、各部门政务公开范畴，通过政府网站和公共媒体实时对外公开，接受社会监督。各地区、各部门必须严格执行目录清单，目录清单之外的涉企收费，一律不得执行。  二、从严审批涉企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  自本通知印发之日起，新设立涉企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必须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但按照国际惯例或对等原则确需设立的，由财政部会同有关部门审核后报国务院批准。各级财政、价格等部门要不断完善对涉企收费的管理，加强收费管理与产业政策的协调配合，完善收费票据和许可证管理制度，建立多层次监督体系，进一步强化事中和事后监管。  三、切实规范行政审批前置服务项目及收费  全面清理行政审批前置服务项目及收费，对没有法律法规依据的行政审批前置服务项目一律取消。各地区、各部门在公开行政审批事项清单的同时，要将涉及收费的行政审批前置服务项目公开，并引入竞争机制，通过市场调节价格。对个别确需实行政府定价、政府指导价的行政审批前置服务实行政府定价目录管理。对列入政府定价目录的行政审批前置服务要严格核定服务成本，制定服务价格。规范行业协会、中介组织涉企收费行为。  四、坚决查处各种侵害企业合法权益的违规行为  各有关部门要加强协同配合，坚决制止各类针对企业的乱收费、乱罚款和摊派等行为，对违规设立的行政事业性收费、政府性基金和行政审批前置经营服务收费项目，一律取消。严禁擅自提高收费标准、扩大收费范围，严禁以各种方式强制企业赞助捐赠、订购报刊、参加培训、加入社团、指定服务，严禁行业协会、中介组织利用行政资源强制收取费用等行为。一经发现坚决予以曝光，并按照《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禁止向企业摊派暂行条例》、《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等法律法规以及党中央国务院关于治理乱收费的有关规定严肃处理，追究有关人员的法律责任。建立企业负担调查信息平台，完善举报和反馈机制，强化社会舆论监督，加大查处力度。  五、全面深化涉企收费制度改革  按照“正税清费”原则，进一步清理取消、整合规范现行涉企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项目，逐步减少项目数量。取消政府提供普遍公共服务或体现一般性管理职能的行政事业性收费项目；结合部门职能调整，合并在不同部门分别设立的相关行政事业性收费项目。取消政策效应不明显、不适应公共财政制度要求的政府性基金项目，依法将具有税收性质的收费基金项目并入相应的税种。建立支持小微企业的长效机制，全面落实已出台的各项收费减免措施，将暂免小微企业管理类、登记类和证照类行政事业性收费改为长期措施。加强涉企收费政策的宣传评估，推动建立和实施第三方评估机制，切实增强收费政策的针对性、时效性。研究完善保护企业权益的相关法律法规。  各地区、各有关部门要充分认识进一步加强涉企收费管理、减轻企业负担的重要意义，充分发挥各级减轻企业负担工作机制的作用，加强组织领导，抓好工作落实。国务院减轻企业负担部际联席会议负责全国范围内的工作指导、组织协调和监督检查，联席会议各成员单位要按照职责分工抓好有关政策的落实。各地区、各有关部门加强涉企收费管理、减轻企业负担工作的落实情况，要及时报送国务院减轻企业负担部际联席会议办公室（设在工业和信息化部）。  　国务院办公厅  　 2014年6月16日 |